

국토교통부예규 제28호

「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」(국토해양부예규 제132호, 2009.9.23) 중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 4월 22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」 일부개정안

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I -5-가-9)의 본문, Ⅲ-1-가의 본문, Ⅲ-1-나의 본문, Ⅲ-1-다의 본문, Ⅲ-2-가의 본문, Ⅲ-2-나의 본문, Ⅲ-2-다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